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5. 21.(금) 배포</p>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이혜윤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 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 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참고 2-1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5조의2 신설)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 ('20) 5개 → ('21) 15개

【붙임】 참고 2-2-1

-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2-2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02) 홍역 및 사스(SARS) → (2009) 신종플루 → (2015) 메르스 → (2020) 코로나19

【붙임】 참고 2-3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붙임】 참고 2-④

【참고】 1.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 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평생교육법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팀장 차영아(6776), 전소정 사무관(6778)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해진(6345), 김성희 서기관(6392), 김동석 사무관(6248)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최민애 교육연구사(6874)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6445), 강은혜 교육연구사(6443)

참고 1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p> <p>이병훈(더) 302 전용기(더) 420 박주민(더) 454 임오경(더) 457 김철민(더) 2124 이탄희(더) 5384 강은미(더) 6658 구자근(국) 72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원생 확대에 따른 신청대상·졸업기준·대출한도 등 대출 및 상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 성적·신용요건은 폐지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재학 중 이자 면제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리금 채권 파산면책 제외 조항 삭제로 파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ICL 원리금 청구권 면책 허용
2	<p>평생교육법</p> <p>김철민(더) 2782 김민석(더) 7528 배준영(국) 82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으로 확대 •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 부여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
3	<p>학교보건법</p> <p>유기홍(더) 48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도록 규정 * 대학은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인인 간호사를 두고 있음
4	<p>유아교육법</p> <p>조경태(국) 67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검진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법률에 규정

참고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자격요건 완화, 취약계층 이자면제 등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ICL* 적용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 대상(범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조제4호 개정)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고,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조제9호·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 개정, 제10조제3항 신설)
 - 또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조제10호 및 제18조제2항, 제19조제6항 개정)
 - (자격요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하였으며,(제9조제1항 개정)
 - (사회취약계층 이자면제)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의2제2항 신설)
 - (파산면책 허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36조제4항 삭제)

□ 동 개정으로 인해

-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u>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u>을 말한다.</p> <p>5. ~ 8. (생 략)</p> <p>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u>마친 경우</u>를 말한다.</p> <p>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u>3년</u>이 지날 때까지 <u>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u>를 말한다.</p> <p>11. ~ 13. (생 략)</p> <p>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 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u>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 신용평점</u>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p>	<p>제3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 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전문 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5. ~ 8. (현행과 같음)</p> <p>9. ----- -----<u>마</u>치는 경우를 말하며, <u>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한다.</p> <p>10. ----- <u>--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u> -----<u>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u>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u>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u>한다.</p> <p>11. ~ 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격 요건) ① ----- ----- ----- ----- ----- ----- <u>학점, 연령</u>----- -----</p>

현 행	개 정 안
<p>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생 략)</p> <p>② <u>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생 략)</p> <p>② <u>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u></p> <p>③ (생 략)</p> <p>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생 략)</p> <p><u><신 설></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재학기간</u></p>

2-1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평생학습법」 일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지역별 특성화에 기반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담당 부서</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td> <td style="text-align: center;">팀장 차영아(6776), 사무관 전소정(6778)</td> </tr> </table>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차영아(6776), 사무관 전소정(6778)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차영아(6776), 사무관 전소정(677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u> <u>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u></p> <p><u>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15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u></p>

2-2 평생교육법


□ 「평생학습법」 일부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 제16조의2,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며,
 - 제42조의2, 제45조의3 등을 개정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법적 활용을 사전 예방한다.
- 제18조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 자료의 외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보다 많은 국민에게 학습비 부담없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며,
- 향후 각 부처의 평생교육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연계·협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해진(6345), 김성희 서기관(6392) 김동석 사무관(62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 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u>정합</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u>----- -----.</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u> 5. <u>“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p>

현행	개정안
<p>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u>평생교육진흥정책</u>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임무) ① ----- ----- -----<u>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u></p> <p>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u>----- ----- ----- -----.</p> <p><u>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u>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② <u>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 ----- ----- <u>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군</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u></p> <p>5.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의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u></p> <p><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u>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p> <p><u>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u></p>

현행	개정안
<p>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 ② (생략) <u><신설></u></p>	<p><u>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u></p> <p>③ <u>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p> <p>⑤ <u>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5 1093 411 1128"><신 설></p> <p data-bbox="245 1559 411 1594"><신 설></p>	<p data-bbox="847 293 1385 1066"> <u>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p> <p data-bbox="847 1093 1385 1532"> <u>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 </p> <p data-bbox="847 1559 1385 2065"> <u>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45 293 411 331"><신설></p> <p data-bbox="209 1693 782 2056">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생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u>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u> 구</p>	<p data-bbox="810 293 1385 1671">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data-bbox="810 1693 1385 1995">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47 2018 1018 2056"><삭제></p>

현행	개정안
<p><u>축·운영</u></p> <p>8. ~ 10. (생략)</p> <p>⑤ ~ ⑧ (생략)</p> <p>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생략)</p> <p>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3조(학습계좌) ① ~ ⑤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u></p> <p>6. ----- ----- -----.</p> <p>제23조(학습계좌)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u></p> <p>⑦ <u>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p>

현행	개정안
<p>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②(생략)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u>---광역시·특별자치시---</u> ----- ----- ----- ----- ----- ----- ----- ----- ----- ----- -----</p>
<p>④·⑤(생략) 제42조의2(지도·감독) ①·②(생략) <u><신설></u></p>	<p>④·⑤(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지도·감독)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1. <u>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45조의3(벌칙) <u>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u></p>	<p><u>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u>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u></p> <p><u>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5조의3(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p>

현행	개정안
<p>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 -----.</p> <p>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p> <p>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p> <p>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p> <p>제46조(과태료) ① ----- ----- -----.</p> <p>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3	학교보건법(일부 개정)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의 적정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정 규모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 배치(제15조제3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으로 인해

- 과대학교에서의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코로나19 등 학교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와 학생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의 질 담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308), 최민애 연구사(687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략).</p> <p>② <u>모든 학교에</u>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u>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p>	<p>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5조의2에서 같다.)에</u>----- 두어야 한다.----- ----- ----- -----</p> <p>③ <u>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u></p> <p>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u>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 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③ (생략)</p>	<p>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4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 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같음할 수 있음이 기존 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이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같음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 또한,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7조제1항 본문에 포함되어 있던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명시 하여 법률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제35조제2항을 개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실시한 건강검진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같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6445), 강은혜 연구사(644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u>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p>	<p>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 ----- -----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 ----- -----제3항-----</p>

현 행	개 정 안
<p>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 ----- ---</p>
<p>제35조(과태료) ① (생략)</p>	<p>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 ----- ----- -----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